

#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간판교체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을 위한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3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수원시 소상공인

(2024. 8. 31. 이전에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할 것
- (종사자 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직전 3년(2022년~2024년) 경기도와 시·군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 취소)

□ 공고기간: 2025. 2. 13.(목)~3. 11.(화)

□ 신청기간: 2025. 3. 5.(수)~3. 11.(화) 18:00까지 [7일간]

□ 지원분야: 간판교체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중 택 1

□ 지원금액: 신청분야에 따라 최대 2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수원시장허브(swsijanghub.kr)에서 공고 확인 후,

경기바로(ggbar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 문)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상권활성화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9:00~18:00(12:00~13:00 제외)이며, 제출 서류 준비하여 방문

• 접수처 :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 선정공고: 2025. 3. 20.(목) 16:00 (예정)

## II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시: 2025. 2. 20.(목) 15:00

○ 방법: 비대면(유튜브 도시재단TV)

○ 주요내용: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영상주소: <https://youtu.be/AKC6nBPK0s8?si=TiXZ-H9CK3TzNyRV>

※수원도시재단TV: (다시보기)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온라인 사업설명회(15분)

□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 교육

○ 일시

• (1차) 2025. 3. 27.(목) 오전 9:30

• (2차) 2025. 3. 27.(목) 오후 3:00

※ 지원대상 선정 후, 1차 또는 2차 일정을 선택하여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온라인 신청시 체크 필수)

○ 장소: 수원도시재단 더함사랑방(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1층)

○ 주요내용: 사업 정산 방법 안내, 역량강화 교육

## □ 지원일정(총괄)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공고	○ 지원사업 공고 [27일간]	2. 13.(목)~3. 11.(화)
▼		
사업 설명회	○ 온라인 설명회 진행 * 유튜브 수원도시재단 TV	2. 20.(목) 15:00
▼		
접수 및 심사	○ 서류 접수 [7일간] * 수원시장허브(swsijanghub.kr)에서 공고 확인 후, 경기바로(ggbar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	3. 5.(수)~3. 11.(화)
	○ 서류심사	3. 12.(수)~3. 14.(금)
▼		
최종선정	○ 선정 공고 * 수원시장허브 게시	3. 20.(목) 16:00 (예정)
▼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교육 운영	○ 회계실무 및 역량강화교육 * 오전 또는 오후 중 ★1회★ 선택하여 필수 참석 * 교육 수료 전에 사전 시행한 시공(제작)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27.(목) (1차) 09:30 (2차) 15:00
▼		
용역(시공) 추진 (소상공인→용역(시공)업체)	○ 시공·제작을 완료한 선정 소상공인은 용역(시공)업체에게 총 집행비용을 선지급 후 재단에 지원금 신청	3. 27.(목)~9. 30.(화)
▼		
사업(운영) 지원 (도시재단→소상공인)	○ 운영 지원(모니터링) * 필요시 도시재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3. 27.(목)~9. 30.(화)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도시재단)	○ 사업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정산서류 제출	4. 1.(화)~9. 30.(화)
▼		
지원금 지급 (도시재단→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	4. 1.(화)~9. 30.(화)
▼		
결과 보고	○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결과보고	10월 중

## III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간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중 1개 선택

신청분야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간판교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신규 간판 교체 지원</li> <li>※ 단순 수리(등갈이 등) 지원 불가</li> </ul>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점포 내부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장판, 가벽, 출입문, 샷시, 목공, 닥트, 바닥, 천정, 필름교체, 내부화장실 개선, 노후전기 배전판 교체, 유리창 씌팅_가게 전면 깨진 유리 교체 등)</li> <li>※ 점포 외부 인테리어 불가</li> <li>※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li> </ul>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포장용기, 제품 포장박스 제작 등</li> <li>※ 반드시 업체명, 브랜드명이 표기되어야 함</li> </ul>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및 초과금은 자부담

※ 용역(시공)업체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며, 업체당 시공(제작)참여는 최대 5회

#### 지원 불가 내용 확인

1. 고객 서비스 개선, 매출 개선,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청해야 함
2. 신청분야는 선정 후 변경이 불가함
3.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소파, 미용 의자, 가구류, 테이블, 판매장, 진열대, 판매대 등
4.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 시행한 점포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은 후 점포환경개선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 □ 선정 제외(신청 제한)

- 사업지원 제외업종(별표1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체
- 최근 3년 내(2022~2024년)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대표 동일 다른 사업자인 경우도 제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용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능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IV 제출서류 안내

---

- 사업 신청 및 제출서식 다운로드 안내
  - 공 고 확 인 : 수원시장허브([swsijanghub.kr](http://swsijanghub.kr)), 방문 접수시 서류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경기바로([ggbaro.kr](http://ggbaro.kr))

## □ 제출서류 목록(사업 신청 때 준비하여 제출)

항 목		서식번호	확인															
필수	1	체크리스트	제1호															
	2	신청서 ※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심사 제외	제2호															
	3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3호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5	청렴이행서약서	제5호															
	6	시공(제작)계획서	제6호															
	7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제7호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업체명으로 발급(대표자명으로 발급 아님) ※ 업체명으로 발급 불가능한 경우(종업원 없는 경우)에만 대표자명으로 발급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국세 납세증명서</td> <td>국세청 홈택스</td> </tr> <tr> <td>지방세 납세증명서</td> <td>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td> </tr> </tbody> </table>	제출서류	발급처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									
	제출서류	발급처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자, 창업 6개월 미만자, 비영리사업자 신청 불가																	
10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과세 사업자</td> <td>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td> <td>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td> </tr> <tr> <td>면세 사업자</td> <td>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td> <td></td> </tr> </tbody> </table>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액 확인 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과세 사업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등의 생략 가능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과세 사업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1	상시 종업원수 확인 서류 (택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종업원 없는 경우</td> <td>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td> <td>국민건강보험공단</td> </tr> <tr> <td>종업원 있는 경우</td> <td>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td> <td>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td> </tr> </tbody> </table> ※ 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미제출 시 선정 불가)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종업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업원 있는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종업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업원 있는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 시	12	간판교체, 점포 내부 인테리어 신청시 제출 필수: 하자보증이행각서(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제10호															
	13	간판교체 신청시(간판 시공 이전) 제출 필수: 용역(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	시공업체															
	14	전기 공사 시(인테리어 시공 이전) 제출 필수: 용역(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시공업체															
우대 사항	15	우대조건 확인서류(최대 10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수원시 착한가격업소</td> <td>2점</td> </tr> <tr> <td>2</td> <td>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점포</td> <td>2점</td> </tr> <tr> <td>3</td> <td>사회적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td> <td>2점</td> </tr> <tr> <td>4</td> <td>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td> <td>5점</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가점	1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2점	2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점포	2점	3	사회적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2점	4	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	5점	-
		구분	내용	가점														
		1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2점														
		2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점포	2점														
		3	사회적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2점														
4	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	5점																

## V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정량평가, 가산점을 합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고득점 사업자, 사업기간 순으로 결정

※ 예비선정: 선정취소 등으로 추가 지원 가능 시 예비 번호순으로 지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정량 평가	전년도 연매출현황 (40점)	- 연 매출에 따른 차등적 점수 부여 (미비, 미제출시 최하 점수)					100점	
		구간	2.6천만원 미만	3.2천만원 미만	4.8천만원 미만	6천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
		배점	40	38	36	34		32
		구간	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배점	30	28	26	24	22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40점)	- (미비, 미제출시 최하 점수)						
		구간	-4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배점	40	38	36	34		32
		구간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 이하		-0% 초과
	배점	30	28	26	24	22		
※ 부가세 증명 미제출 시 매출부문, 매출감소 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일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 매출액 0원 이하, 매출 확인불가, 미신고, 미비, 미제출시 최하 점수 적용								
사업업력현황 (20점)	- 공고일, 사업자등록 개업일 기준							
	구간	18년이상	16년이상	14년이상	12년이상	10년이상		
	배점	20	19	18	17	16		
	구간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2년이상	6개월이상		
배점	15	14	13	12	1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최하점수 적용								
가산 점 (최대 10점)	구분	내용			가점			
	1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2점			
	2	수원페이 10+10 이벤트 참여 점포			2점			
	3	사회적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2점			
	4	수원도시재단 주관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			5점			
총 계						110점		

## □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용역(시공)업체 변경 및 사업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25. 3. 11.(화) 견적서 제출 기한 ※ 접수마감일 기준
  - 2025. 9. 30.(화)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기한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수행기간 중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 사업부실 등 수원도시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선정 소상공인 용역(시공) 추진

- 용역(시공) 시행기간: 2025. 3. 27.(목)~9. 30.(화)
- 용역(시공)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용역(시공)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도시재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 ※ 선정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용역비 전액을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 계좌이체 규정 준수(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 소상공인 대상 교육일(25. 3. 27.) 이전 용역(시공)을 시행한 경우 지원불가, 교육일(25. 3. 27.) 이후 시공 및 지원금 신청 가능
-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신청서(지출증빙 자료 포함)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2025. 9. 30.)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목록(사업 완료 후 준비하여 제출)

항 목		서식 번호	비고	
필수	1	체크리스트 ※ 반드시 신청자(선정업체 대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12호	
	2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반드시 신청자(선정업체 대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제13호	
	3	완료보고서 ※ 용역(시공·제작)내용, 용역(시공·제작)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제14호	
	4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신고 통보용(용역업체가 선정업체에게 발행)	-	
	5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 입금자 성명/수령자 성명/계좌번호/날짜 확인 가능 서류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6	용역(시공)업체 거래명세서 ※용역(시공) 한 업체당 각 1부	-	
	7	용역(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용역(시공·제작)과 관련 없는 업종·업태의 업체에서 사업 추진시 지원 불가	-	
	8	신청자 지원금 수령용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통장 사본	-	
	9	만족도 조사	제15호	
간판 교체 신청 시	※ 간판 시공 이후 제출 필수 (택 1)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제11호 (신고 비대상 확인서)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신고 대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관할구청 신고
신고 대상이 명확히 아닌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	서식 제11호 (간판 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 VI 유의사항

### ■ 선정 소상공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고기간 내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전체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 및 결과·정산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된 직접시공(제작),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 용역(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는 반드시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5개사 이내**로 참여
  - ※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용역(시공) 추진 시 관련된 업태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된 용역(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지원 가능하고, ★간판 시공 완료 후 반드시★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함
  - ※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를 득해야 함(간판 시공 이후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 제출 필수)**

## ■ 견적서 등 신청서식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이행각서 반드시 제출(시공업체와 신청인의 확인 서명 필요)
- 견적서는 신청분야(간판교체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에 대한 견적서(서식 제7호)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시공업체당(업체 최대 2곳) 시공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비교견적서 필수★)

\*예시 1) 시공업체가 1곳인 경우: 총 2개 견적서 제출  
(공사 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예시 2) 시공업체가 2곳인 경우: 총 4개 견적서 제출  
(1번 업체의 공사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2번 업체의 공사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 내부인테리어, 중 전기공사 신청 시에는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간판교체 지원 신청 시에는 간판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간판교체 지원 신청 시 **★시공업체는 견적 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 간판 내역(사이즈 및 규격)에 따른 신고 사항 확인 후 진행 필요

### ※불법 사이즈 및 규격 간판 설치 불가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전화번호 목록

구청	담당내용 및 구역	전화번호	담당과/팀
장안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파장동, 율천동, 정자1·2·3동)	031-228-5504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규/연장/변경) (송죽동, 영화동, 조원1·2동, 연무동)	031-228-5505	
권선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031-228-6507	
팔달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031-228-750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행궁, 매교, 매산)	031-228-7505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031-228-7507	
영통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양성화	031-228-8945	

## ■ 용역(시공) 비용 지출 시 유의사항

- 선정 소상공인은 용역(시공)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시공업체에 선지급 후 도시재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발급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 용역(시공) 비용 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됨(**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 용역(시공) 비용 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금자(선정 소상공인)와 받는분(시공업체)는 사업 신청 시 명의로 일치해야 함
- 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 지원한도 초과금액,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선정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완료하고 모든 비용을 선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간판 시공 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하단(↓) 관할 구청에 신고한 옥외광고물 신고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담당구역 및 전화번호 목록

구청	담당내용 및 구역	전화번호	담당과/팀
장안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파장동, 울천동, 정자1·2·3동)	031-228-5504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규/연장/변경) (송죽동, 영화동, 조원1·2동, 연무동)	031-228-5505	
권선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031-228-6507	
팔달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031-228-750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행궁, 매교, 매산)	031-228-7505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031-228-7507	
영통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양성화	031-228-8945	

- 선정 소상공인과 용역(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부담 면제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지급 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 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금, 자부담금(10% 이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 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함**
- 도시재단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사업변경, 사업포기 및 시공변경 시 유의사항

- 지원분야(간판교체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제품 포장패키지 제작) 변경은 불가하며, 세부 지원내용에서만 변경 가능
-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 신청서【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함(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용역(시공)업체 변경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서식 제9호】를 재단으로 요청 및 제출, 변경 승인 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사업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 내용 변경 시
  - 제작비용이 상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
  -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공급가액의 90%)으로 감액 변경 지원됨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 소상공인은 수원도시재단 보조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 3자 부당개입, 선정 소상공인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 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별표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앞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